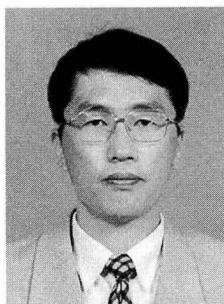


재난보험제도 개발방향



이 범
삼성화재
프로젝트지원팀장

목 차

1. 국내 재난보험제도 현황
2. 신규보험제도 개발방향

1. 국내 재난보험제도 현황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련 보험제도는 법률로써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보험과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되며 유사제도로써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닌 공제제도가 있다.

가. 재난유형별 보험(공제)의 종류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유형은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의 안전관리 분류체계를 참고하였다. 동 분류체계는 관리대상 시설 및 위험에 따라 시설·산업·교통 및 화재 등의 4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난유형별 보험(공제)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2. 신규보험제도 개발방향

가. 신규 보험제도의 필요성

여러 종류의 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미가입된 보험사가 지대가 많고, 대형재난시마다 보험에 의한 보상이 거의 전무한 이유는 현 의무보험제도의 한계성과 임의보험의 가입률 저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먼저, 의무보험의 한계성을 나열해 보면,

첫째, 보험가입 대상시설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중·소 다중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대다수 재난시설이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담보하고 있는 損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표 1> 재난유형별 보험(공제)의 종류

유형	의무보험	임의보험	공제제도
시설 재난	<input type="radio"/>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input type="radio"/>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input type="radio"/> 영업배상책임보험 <input type="radio"/>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등	<input type="radio"/> 지방자치단체배상공제
산업 재난	<input type="radio"/> 건설공사·조립보험 - 정부 빌주 <input type="radio"/> 승강기보수업자보증보험 <input type="radio"/> 산업재해보상보험 <input type="radio"/>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	<input type="radio"/> 건설공사·조립보험 - 민간 빌주 <input type="radio"/> 도급업자특약부 영업배상책임보험 <input type="radio"/> 근로자재해보장보험 등	<input type="radio"/> 선원공제
교통 재난	<input type="radio"/>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input type="radio"/>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input type="radio"/> 항공보험	<input type="radio"/> 선주배상책임보험 <input type="radio"/> 자동차종합보험 <input type="radio"/> 선박보험 등	<input type="radio"/> 선주배상공제 <input type="radio"/> 여객공제 <input type="radio"/> 택시공제 <input type="radio"/> 버스공제 <input type="radio"/> 화물자동차공제 <input type="radio"/> 낚시어선재해공제
화재 등 재난	<input type="radio"/>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input type="radio"/>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input type="radio"/> 원자력보험 <input type="radio"/> 수렵보험	<input type="radio"/> 재산종합보험 등 (특수건물 제외)	<input type="radio"/>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공제 <input type="radio"/> 재해복구공제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오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나 각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담보위험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보험사가 지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임의보험의 문제점은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으로서, 위에서 열거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볼 때 보험가입률은 5%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난가능성이 큰 시설물소유자들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보험사업자의 상품 부재, 인수 회피, 마케팅 미흡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 이므로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보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특단의 신규 의무보험제도의 개발·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나. 신규 보험제도 개발방향

신규 보험제도 필요분야를 도출하기 위하여 2

가지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담보위험 및 사고의 특성에 따라 신규 보험제도 필요 분야를 일반 재난위험분야와 특수 재난위험분야로 대별한 후, 일반 재난위험분야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시설물소유자와 시공자로 구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여기에서 일반 재난위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 사고 등 통상 공간제한적이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며, 특수 재난위험은 일반 재난위험과는 사고 및 손해특성이 상이한 환경오염을 의미한다.

(1) 일반 재난위험분야의 신규보험제도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일반 재난위험의 배상(보상)주체 및 주요 피해자는 <표 3>과 같다.

<표 2> 현행 의무보험제도와 주요 보험사각지대

시설 구분		현행 의무보험제도	주요 보험사각지대
기간 시설	도로, 지하철, 철도	不 在	교량, 터널 등의 붕괴사고
	항공시설	不 在	터미널 등 건물의 화재, 붕괴 및 폭발
교통 시설	댐, 하천, 상하수도 등	不 在	댐, 하천의 붕괴, 상하수도 파열 등
	삭도, 궤도	不 在	케이블카, 리프트 등의 추락 등
유·도선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
	항공기	항공보험	-
산업 시설	전력시설 - 원자력발전소 - 화력발전소 등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 不 在	- 전력중단사고 등
	다중이용전기시설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화재위험)	붕괴나 특수건물 외의 전기누전 화재 등
	열공급시설	不 在	열공급시설의 화재, 폭발 등
	산업단지시설	不 在	공단시설의 화재, 폭발 등
	대형광고물	不 在	대형광고물 붕괴, 낙하 등
	가스취급시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광산시설	산업재해보상보험	-
	석유비축시설	不 在	비축기지 화재, 폭발 등
	대형공사장	건설공사/조립보험 (정부발주공사)	- 민간발주공사의 건설중 사고 - 공사완료 후의 시공하자로 인한 사고 (정부 및 민간발주 공히 해당)
	유원시설	不 在	바이킹, 고속열차 등의 탈선, 추락 등
다중 이용 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도장, 볼링장 등 '소규모체육시설업'에서의 화재, 붕괴 등
	문화, 공연, 전시시설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화재위험)	붕괴나 3,000m ² 미만의 중소규모 관람/집회 시설의 화재, 붕괴 등
	관광, 숙박시설, 목욕장 업, 식품접객시설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화재위험)	중소규모 관광/숙박시설 등의 화재, 붕괴 등
	청소년시설	不 在	수련시설의 화재, 붕괴 등
	판매시설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화재위험)	붕괴나 3,000m ² 미만의 중소규모 판매시설의 화재, 붕괴 등
	병원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화재위험)	붕괴나 3,000m ² 미만의 중소규모 병원의 화재, 붕괴 등
	터미널	不 在	터미널 내의 화재, 붕괴 등
교육 시설	학교/학원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화재위험)	붕괴나 3,000m ² 미만의 중소규모 학원건물의 화재, 붕괴 등
	연구시설	不 在	연구시설 내의 화재, 폭발 등
주거 시설 · 빌딩	공동주택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화재위험)	붕괴나 연립, 다세대주택 및 16층 미만의 아파트의 화재, 붕괴 등
	공공청사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화재위험)	붕괴나 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11층 미만의 공공청사의 화재, 붕괴 등
	대형건축물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화재위험)	붕괴사고나 민간소유 11층 미만 빌딩에서의 화재, 붕괴 등

<표 3> 재난발생 원인별 배상주체

재난 원인	배상(보상)주체	주요 피해자
• 유지, 관리상 과실	시설물 소유·관리자	제3자
• 부실시공	시공자	시설물 소유자
• 이용자의 부주의	-	이용자 자신

위의 재난원인별 배상(보상)주체를 고려할 때 신규 배상책임보험 수요는 크게 2가지 방향에서 발생하며 이에 적합한 보험제도는 다음과 같다.

- 재난시설의 소유, 관리자를 피보험자(배상 주체)로 하고 시설물에 기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가칭 “재난배상책임보험”)
- 건축물의 시공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가칭 “시공하자배상책임보험”)

(2) 특수 재난위험분야의 신규보험제도

특수재난위험으로 분류되고 있는 환경오염사고는 화재, 폭발, 붕괴 등 일반적인 재난과는 달리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보험제도 또한 그 위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도입 할 필요성이 있다.(가칭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 원인 파악의 어려움
- 피해 규모의 거대성
- 장기간의 잠복기간
- 시간 경과에 따른 피해 규모의 광역화
- 피해액 산출의 어려움 등

환경오염분야는 21세기에 대두되는 최대의 재난영역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보험업계의 전문성, 경험 및 담보력이 불충분하나, 선진국의 제도 및 사례를 연구하여 신규 보험제도의 도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기능 강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개의 의무보험 중에 손해보험회사의 사고예방기능을 규율하고 있는

보험제도로는 2가지가 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보험협회의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제도(동법 제15조 제1항)
-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건설기간중 손해보험회사의 위험도조사제도(조달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4항)

위의 2가지 제도는 화재분야와 건설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사고예방에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그 외 분야에는 보험회사의 사고예방 기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신규보험제도의 도입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관련분야에 대한 위험점검, 진단, 조사 등의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동 분야에 대한 사고예방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크다.

보험회사가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이 필요한 바, 이에 수반되는 보험회사의 비용 증가는 필수적이나, 사고예방기능을 통해 사고율이 낮아지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보험회사에도 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위험관리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요율의 할인·할증제 등을 적극 강구하여 위험관리 우수업체에는 보험료 할인을, 위험관리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도모하는 한편, 최소한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토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위험통제력을 확보토록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⑩